

# 속표지 교체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 발 간 사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시기에 교회법 특집은 세 편의 논문과 한 편의 토미즘에 관한 번역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딱딱해 보이는 교회법을 연구하는 논문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부드러운 신앙의 속살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교회 자신과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간결하고 정확한 법 규정으로 드러냈음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박정원 신부는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달리타스’에 대해,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충분히 고민했으며, 그 결과로 1983년 법전에 ‘교구 사목평의회’와 ‘본당 사목평의회’가 신설되었음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사목평의회를 설치한 유럽의 여러 교구에서의 다양한 갈등 상황과 그에 따른 실망으로 참된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아보지도 못하는 결과가 도래했던 과거를 돌아봅니다. 교회 내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 오인된 사목평의회 위 치 재평가를 위해 본질적인 교회론과 ‘친교’ 개념을 살펴보고,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상호보완성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공동 책임성의 요소들인 ‘구체적인 삶’ ‘신앙감각’ ‘사도직 활동’과 실현의 도구인 교구 사목평의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교회법에 근거하여 신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제안된 사목평의회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올바른 사목평의회 운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재천 신부는 교회법 차원에서의 수도회 설립에 대한 법적 요건과 법적 절차를 고찰하고 이를 명확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된 연구자료로 수도회 설립에 관한 교회법 조문과 교황청의

관행을 채택합니다. 여기서 수도회의 고유법 특히 회헌의 제정과 승인이라는 요소와 교회 관할 권위에 의한 카리스마의 식별과 승인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한 법적 요소들입니다. 카리스마 식별의 다섯 가지 기준, ‘신적 기원’ ‘교회에 대한 적극적 사랑’ ‘독창성’ ‘특수성’ ‘필요성’은 수도회 회원이라면 자주 되새겨야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 각 수도회의 본래 카리스마를 수도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회 설립과 과정에 있어서 교회법 제579조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은사의 진정성」(2020)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연구는 성소자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천주교회의 각 수도회들이 창립할 때의 카리스마를 심도 있게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연구입니다.

최화인 신부는 본당 사목구의 주임에게 집중된 사목에 대한 보완을 평신도의 역할,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인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하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설립된 공립 단체의 역할을 교회법 제301조를 통해 고찰합니다. 반면에 신자의 결사권을 더 잘 누릴 수 있는 사립 단체는 비록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적이어야 함을 교회법 제298조를 통해 밝혀 줍니다. 사립 단체라고 하더라도 종속성에 있어서 공립 단체와는 차이가 있지만, 교회 권위의 통치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교회 규율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글은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의 구분 기준과 설립과 폐쇄 등에 대한 교회법적 이해를 심화시켜 줍니다.

토미즘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이재룡 신부는 엘레어노어 스텐프의 ‘아퀴나스의 구속(救贖) 이론’을 번역하여 게재했습니다. 당연히 여겼던 교회의 구속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문제 제기과 그에 대한 아퀴나스의 이론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글임

니다. 하느님은 모든 빛(죄)을 갚도록 요구하지만, 그 빛을 당신 아들의 희생을 통해 갚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의와 자비의 개념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느님은 빛을 그냥 면제시켜 주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왜 인간의 고통과 영원한 처벌까지 없애지 않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저자는 아퀴나스가 펼친 보속과 은총이라는 개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겨울호는 ‘코로나 19 이후의 사목’이라는 특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구태의연한 사목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사목을 찾아나선 분들의 연구와 실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28일  
혜화동에서 사목연구소 소장  
윤종식 신부

---

발간사 / 3	윤종식
<b>(특집) 교회법</b>	
교회의 공동 책임성의 기본 원리들에 대한 교회법적 고찰 / 8	박정원
수도회 설립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 54	정재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와 사립 단체 / 96	최화인
<b>(번역)</b>	
아퀴나스의 구속(救贖) 이론 / 143	엘레어노어 스텐프, 이재룡 옮김
<b>(부록) / 195</b>	
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 197	
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 203	
I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 206	
I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 208	
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 209	
司牧研究 총목차(1994-2023 겨울) / 211	

**PASTORAL STUDIES** No.52. — *Canon Law*. 2024 Summer

## Contents

---

Editorial Preface/ 3 *Rev. Yun, Jongsik, S.L.D.*

## [Special Issue] Canon Law

A Study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hurch's Co-Responsibility / 8  
*Rev. Park, Jungwon, J.C.D.*

A Canonic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ligious Institutes / 54  
*Rev. Jeong, Jaechon, J.C.L.*

Public and Private Associations of Christ's Faithful / 96  
*Rev. Choi, Hwain, J.C.L.*

## [Translation]

Aquinas's Account of the Atonement / 143  
*Eleonore Stump*  
*tr. by Rev. Lee, Jaeryong, Ph.D.*

[Appendixes] / 195